

조선전기 간행의 「의옥집」*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Euiokjib* was Published
at the Former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吳 龍 燮(Oh, Yong-Seob)**

◁ 목 차 ▷

- | | |
|-----------|-----------|
| 1. 서 언 | 4. 가치와 의의 |
| 2. 편찬과 전본 | 5. 결 언 |
| 3. 조선전기본 | <참고문헌> |

<초 록>

「의옥집」은 오대시대 때 화옹이 처음 한나라 이후의 의옥사안 29건을 편찬한 뒤에 그의 아들인 화몽이 계속 이어 완성한 책이다. 주로 형법에 해당되는 사안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원래의 「의옥집」이 망실된 상태에서 후대인들이 계속 증보 또는 개찬하면서 내용과 체제가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의옥집」이 우리나라에 처음 입수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국가의 형벌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두었던 고려 문종 13(1059)년에 이미 개판된 일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태종 18(1418)년과 성종 14(1483)년에 간행하는 등 국가통치에 필요한 책으로 인식되어왔다.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 동아시아도서관에는 조선전기에 간행된 고본 「의옥집」 3권1책이 전하고 있다. 이 책은 태종 18년에 개판된 판본으로 추정된다. 비록 후쇄본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공개된 「의옥집」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선본으로 그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저자 화옹의 서문이 남아 있는 유일본이다. 둘째, 원래의 의옥사안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화옹이 편찬한 상권 29건의 의옥사안과 후대본에서 탈락된 의옥사안 등을 알 수 있다. 넷째, 오자가 거의 없는 선본이다. 다섯째, 이 판본의 저본으로는 고려 문종 13(1059)년 2월에 간행한 판본이다. 여섯째, 이 판본도 원래의 「의옥집」이 아니라 후대에 의옥사안이 보충된 것일 수도 있다.

要語 : 「의옥집」, 화옹, 화몽, 절옥귀감, 당음비사

* 본 연구는 인천전문대학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인천전문대학 문헌정보과 교수(woojook@icc.ac.kr)

접수일: 2007년 5월 23일 최초심사일: 2007년 5월 25일 심사완료일: 2007년 6월 21일

<ABSTRACT>

Euiokjib(疑獄集) was compiled by Hwa Ung in the Five Dynasties Period in China(五代) and supplemented by his son Hwa Mong. This book first included 29 criminal cases since the Han Dynasty, but later it was revised and complemented by other people so that its content and structure became gradually changed.

It is not known when *Euiokjib* was first imported into Korea, but it was published in the first year of King Munjong's reign(1059) in the Goryeo Period, and later in the 18th year of King Taejong's reign(1418) and the 14th year of King Ssongjong's reign(1487) in the Joseon Period. It means that this books was considered important in governing the nation.

East Asian Library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currently holds a volume with three chapters of *Euiokjib* published in the early Joseon Period. It was printed with woodblocks first carved in 1418. This edition of *Euiokjib*, while published in the later period, is still the oldest existing copy, and shows such valuable characteristics as follows:

First, an original preface by Hwa Ung still remains only in this book. Second, the original titles of criminal cases included in the book can be confirmed. Third, the original 29 cases included in the first edition and the cases omitted in the later period can be identified. Fourth, this particular edition shows the best and complete text without wrong words or errors. Fifth, this book was printed with woodblocks carved on the edition published in 1059 in the Goryeo Period. Sixth, this edition carved in 1418 could include a version complemented in the later period, but not the original version.

Key words : *Euiokjib*, Hwa Ung, Hwa Mong, *Jeolokguigam*, *Dangumbisas*

1. 서 언

「疑獄集」은 오대시대 때 和凝(898-955)이 의옥사안 29건을 편찬한 뒤에 그의 아들인 和嶠(951-995)이 續補하여 완성한 책이다. 주로 형법에 해당되는 사안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당시 국가의 법질서유지를 위해 긴요한 책이었다. 그래서 후대로 오면서 점차 보충되기 시작했고, 명나라 張景은 「補疑獄集」 6권을 별도로 완성하였다. 그러나 원래의 「의옥집」이 망실된 상태에서 후대인들이 계속 증보 또는 개찬하면서 내용과 체제가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원래의 「의옥집」이 후대에 보충되거나 개찬된 가장 큰 이유는 처음 수록한 의옥사안들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의옥집」에 수록된 것보다 더 많은 사안들을 포괄한 새로운 저작인 「折獄龜鑑」과 「棠陰比事」 등이 편찬되면서 「의옥집」의 중요성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고본 「의옥집」에 대한 요구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사고전서」를 편찬할 때도 후대 변형된 「의옥집」을 저본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 중국과 일본에 전하는 「의옥집」들은 수록된 사안과 내용이 「사고전서」에 수록된 것과 거의 동일하다.

「의옥집」이 우리나라에 처음 입수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국가의 형벌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두었던 고려 문종 13(1059)년에 이미 개관된 일이 있었다.¹⁾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태종 18(1418)년과 성종 14(1483)년에 간행하는²⁾ 등 국가 통치에 필요한 책으로 인식되어왔다.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캠퍼스 동아시아도서관³⁾에는 조선 초기에 간행한 고본 「의옥집」 3권1책이 전하고 있다.⁴⁾ 이 책의 권두에는 원저자 화응

1) 「高麗史」 文宗13年 2月 甲戌(條).

“安西都護府使, 都官員外郎, 異善貞等, 進新雕...疑獄集一十一板...詔置秘閣.”

2) 「朝鮮王朝實錄」 成宗14年 8月 甲申(條).

“臣, 以爲聽獄之吏, 必有平恕之心, 則庶乎得其情, 而獄不誣矣. 如棠陰比事, 疑獄集等書, 刊布州縣, 使守令常觀之...上曰, 在人而已, 不在觀書, 然若頒行, 庶或有補, 其刊行之.”

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이하 버클리대학으로 약칭함.

4) 疑獄集. 上,中,下 / 和凝(898-955) 編; 和嶠(951-995) 附續. - 木板本. - [刊寫地未詳]:

의 서문과 그의 아들 화몽의 서문이 있다. 화응의 서문은 지금껏 공개된 적이 없는 것이고, 화몽의 서문을 통해 후대인들이 「의옥집」의 卷數와 저작구분표시 등을 변조한 사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수록된 의옥사안들의 제목이 후대 본과는 완전히 다르고, 내용 역시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을 두루 살핀 결과, 버클리대학 소장의 「의옥집」이 원래의 「의옥집」에 가장 충실한 판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다만 발문을 포함한 마지막 몇 장이 결락되어 이 판본만으로는 간년을 알 수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이였다.

그런데 「청분실서목」에는 태종 18년에 간행된 「의옥집」이 소개되어 있다.⁵⁾ 이인영의 옛 소장이었던 이 판본에 대해 이후 더 이상의 조사나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현재는 소장사실마저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다행히도 버클리대학 소장본은 「청분실서목」에서 기술해 놓은 형태적 특징과 전체의 구성이 동일하였다. 버클리대학 소장본 역시 태종 18년 간본으로 추정되나 본 고에서는 조선전기본으로 일컬고자 한다.

그러므로 버클리대학 소장본은 이인영의 옛 소장본과 함께 현재까지 공개된 「의옥집」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 판본의 내용편성과 저본추정 그리고 후대의 「의옥집」과의 다른 점 등을 주로 살펴 이 책이 현전하는 「의옥집」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본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국내외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의옥집」 선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는 향후 법의학술을 포함한 유관분야의 연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刊寫者未詳], [朝鮮前期]

3卷1冊: 四周單邊 半郭 18.5 × 12.9cm, 無界, 11行20字, 下向黑魚尾; 26.3 × 17.1cm

版心題: 獄

序: 贈中書令右僕射平章事魯國公和凝撰

附續序: 男將仕郎太子中允和嶸述

5) 李仁榮, 「淸芬室書目」(서울: 寶蓮閣, 1968), 167-169.

2. 편찬과 전본

2.1 편찬

「의옥집」은 화옹과 화몽이 한나라 이래 역사서 등에 전하는 聽訟과 斷獄 그리고 冤枉 등을 수록하여 송나라 태종 옹희(984-987) 초기에 왕께 올린 것이다.⁶⁾ 의옥이란 내용이나 처결에 의혹이 있는 옥사를 말한다. 그러니까 범죄사건의 여러 정황이 명백하게 판결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하기 어려운 의옥사를 슬기롭게 해결한 사안들을 맨 처음 엮은 것이 바로 「의옥집」이다.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었는데 상권 29건은⁷⁾ 화옹이 엮은 것이고, 중 하권은 화몽이 附續, 곧 덧붙여 이은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사용한 부속이라는 말은 화몽이 지은 서문의 제목에서 옮긴 것이다.⁸⁾ 그러나 화몽이 사용한 부속이라는 저작구분표시 역시 아버지 화옹의 뜻을 따른 것이다. 곧 “뒤에 보거나 듣는 것이 있으면 또한 덧붙여 잇겠다.”⁹⁾고 한 아버지 화옹이 지은 서문의 마지막 문구를 따라 자신의 저작 역할을 나타낸 것이다. 더욱이 중권과 하권의 첫머리에도 “將仕郎守太子中允和嶠 附續”과 같이 부속이라는 저작구분표시를 해 두었다. 그러므로 「의옥집」은 화옹이 편찬하고 화몽이 부속하였다고 하는 것이 원저작자들의 의도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저작구분표시에 대해 「군재독서지」¹⁰⁾와 「문헌통고」 경적고¹¹⁾

6) 脫脫(元)等撰, 『宋史』 卷439. 列傳 第198. 文苑. 和峴弟嶠附, “先是, 擬嘗取, 古今史傳, 聽訟斷獄, 辨雪冤枉等事, 著爲疑獄集, 嶠因增益事類, 分爲三卷, 表上之.”

7) 의옥사안의 수의 단위에 대해 중국의 옛 목록 등에는 “條”로 표기하고 있으나 본 고에서는 조선전기본의 표기를 따라 “件”으로 함.

8) 和嶠, 附續疑獄集序.

9) 和嶠, 疑獄集序, “後有見聞, 亦可附續”.

10) 晁公武(宋)撰, 『郡齋讀書志』(『中華漢語工具書書庫』: 83. 同編輯委員會編,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2, 323), “疑獄三卷, 有晉和嶠撰, 纂史傳決疑獄事, 其上卷擬書也, 下中卷, 嶠子嶠所續”.

11) 『文獻通考經籍考』(馬端臨(元)撰, 『新校本文獻通考經籍考』,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6, 738)에서도 晁公武의 『郡齋讀書志』 중의 疑獄集 內容을 따라 기술하였음.

에서는 “상권은 응, 중 하권은 그의 아들인 몽이 속보한 것이다”고 하였고, 「직제 서록해제」에서는 “화응의 의옥집을 그의 아들 화몽이 3권 67조로 속보하였다”¹²⁾고 하여 수록한 의옥사안의 수까지도 기록하고 있다. 「송문충목」에서는 “의옥집 3권은 화응과 그의 아들 화몽이 지은 것”¹³⁾이라고 하였으나 「송사」 예문지에서는 “화응 의옥집 3권”¹⁴⁾과 같이 화몽은 저작자로 기록되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본 기록들은 「송사」예문지를 제외하고는 「의옥집」은 3권으로 화응과 그의 아들 화몽이 함께 편찬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사고전서」에 수록된 「의옥집」의提要에서는 “「의옥집」은 오대시대 화응과 그 아들 몽이 함께 지은 것이다”¹⁵⁾고 하면서도 수록된 「의옥집」에는 권1-4까지 모두 “晉 和凝 撰”과 같이 아버지 화응의 저작사실만 표시하여¹⁶⁾ 혼란을 더하고 있다.

저작사실뿐 아니라 전체의 권수도 문제였다. 처음 3권이던 것이 4권이 되고, 명나라 때 張景은 6권을 보충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사고전서」에 수록된 「의옥집」의提要에서는 “지금 전하는 4권본은 후인들이 나눈 것으로 의심이 된다.”¹⁷⁾고 하면서도 장정의 「보의옥집」 6권과 합친 10권본 「의옥집」을 수록하였고, 「사고전서간명목록」에서도 이를 따르고 있다.¹⁸⁾ 이렇게 청나라 대에 와서는 「의옥집」의 권수마저도 애매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혼란의 원인은 「의옥집」의 권수와 수록된 의옥사안이 후대에 보충되었고, 고본 역시 전하지 않아 본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2) 陣振孫(宋)撰, 「直齋書錄解題」(「中華漢語工具書書庫」: 83. 同編輯委員會編,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2, 92), “折獄龜鑑三卷...初五代宰相和凝, 有疑獄集, 其子水部郎和嶸, 續爲三卷六十七條.”

13) 王堯臣(宋)等撰, 錢東垣(清)等輯釋, 「崇文總目輯釋」(「續修四庫全書」;第916冊. 同編纂委員會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657), “疑獄集三卷 和凝及子嶸撰.”

14) 脫脫(元)等撰, 「宋史」卷204. 藝文志 第157. 藝文3, “和凝疑獄集三卷.”

15) 「欽定四庫全書」: 第729冊, 795, “疑獄集, 五代和凝, 與其子嶸, 同撰.”

16) 「欽定四庫全書」: 第729冊, 798, 803, 810, 817).

17) 「欽定四庫全書」: 第729冊, 795), “今本四卷, 疑後人所分也.”

18) 永瑤等(清)編, 「四庫全書簡明目錄」(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385), “疑獄集四卷, 補疑獄集六卷, 疑獄集, 晉和凝及其子嶸撰.”

그런데 「옥해」에는 “화옹이 29조를 모아 상 1권으로 만들고, 아들 화몽은 38조를 이어 하 2권으로 만들었다”¹⁹⁾고 하여 권수와 수록된 사안의 수를 구체적으로 밝혀 놓았다. 버클리대학 소장의 조선전기본과 비교해보니 전체가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었다는 것과 상권에 수록된 의옥사안이 29건이라는 사실은 동일하였다. 그러나 중 하권에 수록된 의옥사안의 수는 7건의 차이가 있었다.

2.2 전본

臺灣의 국가도서관에는 嘉靖乙未(1535)년 李崧祥의 서문과 至元 16(1279)년 杜震의 서문이 있는 「의옥집」 간본이 있다. 명나라 장경의 「의옥집」 6권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후대본이다. 모두 10권인데 장서인으로 보아 劉承幹의 옛 소장본임을 알 수 있다.²⁰⁾ 또 상중하 3권으로 된 사본이 있다.²¹⁾ 이 책의 권상에는 저작구분표시가 있는데 화옹이 “集”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본 역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의옥사안이 御史佯失狀인 것으로 보아 「사고전서」에 수록된 저본과 같은 계통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가도서관에도 가정을미년의 10권본, 1644년의 4권본, 1851년의 10권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535년 간본 두 질을 선본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시마다(島田)는 대만과 일본에 전하는 「의옥집」을 조사한 일이 있었다.

현전하는 간본으로는 대만의 국립중앙도서관에는 3권 1책본과 3권 4책본이 있다. 3권 1책본은 화몽의 서문과 원나라 지원 16년의 두건의 서문이 있고, 3권 4책본은 화몽의 서문과 명나라 가정 14(1535)년의 이승상의 서문이 있는데 명나라 장경이 편찬한 6권²²⁾이 첨부되어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에는 天一閣藏本을 베낀 3권 4책의 文淵閣四庫全書本²³⁾이 있다. 이 책에는 화몽의 서문,

19) 王應麟, 「玉海」 卷67 刑制, 紹興折獄龜鑑(국립중앙도서관장. 韓貴古10-20-나13), “和凝, 集古今明於聽斷者, 二十九條, 爲上一卷, 子嶠續, 三十八條, 爲下二卷, 表上之.”

20) 請求記號 303 05828. 印: 吳興劉氏嘉/業堂藏書記.

21) 請求記號 303 05827.

22) 「사고전서총목제요」에 따르면 장경은 명나라 세종 嘉靖2년(1523)에 補疑獄集6권을 편찬하였음.

두전의 서문이 있으며 역시 장경이 편찬한 6권이 첨부되어 있다. 일본에는 동경 대학 부속동양문화연구소 大木文庫에 함풍원년(1851)의 桐鄉金氏校刊本이 1질 2책, 함풍 3년(1853)의 嶺南徐氏校刊本 1질 4책이 전하고 있다. 두 본 모두 권1-2는 화옹 편, 권3-4는 화봉 편, 권5-10은 장경 편으로 되어 있고, 권말에는 청나라 金鳳淸이 편찬한 부록 1권이 첨부되어 있다.²⁴⁾

이 기록에 등장하는 桐鄉金氏校刊本이나 嶺南徐氏校刊本은 청나라 시대 간본으로 이미 「의옥집」 원래의 모습을 잃은 뒤에 간행된 판본들이다. 시마다의 기록과 중국과 대만의 국가도서관 소장도서 검색결과를 볼 때, 현재 중국과 대만 및 일본의 도서관에 전하는 「의옥집」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1535년 간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문종 13년, 태종 18년, 성종 14년에 간행되었으나 이후의 간행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전본으로는 과거 청분실과 중경문고에 소장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²⁵⁾

2.3 현대의 교석본

「사고전서」에 수록된 「의옥집」을 비롯한 후대의 「의옥집」은 권수와 수록된 사안의 수가 옛 목록과 다른데다 저작자들이 사망한 뒤의 것들도 있어 교감이 필요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양봉곤은 이러한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하였다.²⁶⁾ 그는 「의옥집」에 수록된 권수가 4권인 것과 의옥사안의 수가 67건(현재는 66건)

23) 浙江省 范懋柱家 天一閣藏本.

24) 島田正郎, 「疑獄集・折獄龜鑑・棠陰比事」, 「中國法制史」(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3), 320.

25) 「韓國古書綜合目錄」(서울: 國會圖書館, 1968)에 따르면 의옥집은 청분실에 3권 1책, 中京文庫에 2책이 있다고 되어 있다. 버클리대학 소장본은 청분실 이인영의 옛 소장본과는 달리 후반부가 결락되어 있는데다 그의 옛 소장본이라는 어떠한 단서도 없다. 해방 전 개성의 중경문고에 소장되어 있었다는 「의옥집」과의 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26) 楊奉琨, 「疑獄集折獄龜鑑校釋」(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88).

「의옥집교석」의 卷次와 事案의 배열은 「사고전서」에 수록된 「의옥집」의 권1-3과 동일함. 한편 「의옥집」은 명나라 鄭克이 편찬한 「折獄龜鑑」에 대부분 수록되었으므로 이 책보다 약간 먼저 간행된 劉俊文의 「折獄龜鑑譯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도 참고가 된다.

을 넘어난 것들은 모두 후세 사람들이 망령되게 보탠 것이라고 하였다. 권수는 송원대의 목록을 보아 3권이 맞고, 명나라 이후 4권으로 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후대인들이 보탠 의옥사안은 화몽이 이 책을 왕께 바쳤다는 웅정초기 이후의 것들로 판단하였고, 주 인물의 생몰년과 활동사실도 함께 살폈다.

이러한 양봉곤의 교석에 대해 시마다는 “楊氏의 식견에 대해 인정은 하지만 앞의 3권 역시 이것에 따른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지라도 아쉽기 그지없다”²⁷⁾면서 교석의 대상 선정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또 화몽의 서문에 “期滿百條, 勒成四軸”이라고 한 사실과 「사고전서」 수록 의옥집의 권1에 23건, 권2에 24건, 권3에 19건, 권4에 34건 등 모두 100건이 수록된 것이 “改纂한 까닭으로 생각 된다”²⁸⁾며 나름대로 개찬의 동기를 파악하였다.

양봉곤은 「의옥집」을 교석할 때 후대에 첨가된 의옥사안을 제외하는 등 가능한 원래의 「의옥집」에 근접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특히 화몽이 아버지 화응을 이어 「의옥집」을 일단락 지은 뒤에 발생한 의옥사안을 제외한 66건의 의옥사를 교정하고 주석해 놓았다. 그가 상중하 3권으로 엮은 의옥사안은 「사고전서」에 수록된 「의옥집」 10권²⁹⁾ 중에서 권1-3까지의 의옥사 66건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다만 권1-3과 같이 숫자로 된 卷名을 상중하로, 66건의 의옥사안 제목은 자신이 저본으로 사용한 嶺南徐氏校刊本에 따라 四字成語로 바꾸었다.

그런데 양봉곤은 하권의 劉集屠刀 사안의 아홉 번째 주석에서 “군자가 말하기를(君子謂)”에 대해 “(군자는) 화응이 「의옥집」에(이 사안을) 수록할 당시 「옥당 한화」를 지은 사람을 일컫는 것이다”³⁰⁾라고 주석하였다. 그러나 이 사안은 조선 전기본에는 상권 29건에 포함된 사안이 아니라 하권 제1에 속한 사안으로 제목은 認方知賊이다. 「의옥집」은 3권 중에서 상권만이 화응의 저술이다. 그러므로 이 사안은 화응이 아니라 아들 화몽이 「의옥집」에 편입시킨 것이었다. 그가 “和凝云

27) 島田正郎, “疑獄集・折獄龜鑑・棠陰比事”, 『中國法制史』, 321.

28) 島田正郎, “疑獄集・折獄龜鑑・棠陰比事”, 『中國法制史』, 322.

29) 「疑獄集」(『文淵閣四庫全書』: 第729冊), 795-816.

30) 楊奉琨, 『疑獄集折獄龜鑑校釋』(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88), 34, “君子謂, 當時和凝在收入《疑獄集》時所加, 指《玉堂閑話》撰者”.

云”과 같은 주석을 하게 된 것은 상권에 포함된 29건이 어떤 사안들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3. 조선전기본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의옥에 대한 논의는 일찍부터 있어 왔다. 고려 문종은 원년(1047) 6월에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린다.

법률이란 형벌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분명하면 형벌이 정당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 輕重을 잃게 된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법률도 잘못된 것이 많으므로 근심하고 있다. 시중 崔冲은 여러 법관들을 모아(법률을) 거듭 상세하게 교정을 더하여 분명하고 정당하게 하는데 힘쓰라.³¹⁾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지원할 책이 필요하게 되자 처음으로 문종 13(1059)년 2월에 異善貞 등이 「의옥집」 11판을 새롭게 새겨 바쳤던 것이다.³²⁾ 「의옥집」이 처음 완성된 지 약 70여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이후 조선 태종 18(1418)년에 충청도 洪州에서 다시 「의옥집」을 간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인영의 옛 소장목록인 「청분실서목」에서 알 수 있다.³³⁾ 이인영은 이 판본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소개해 놓았다. 발문은 通善郎 洪州儒學 敎授 官인 田藝가 永樂 戊戌(태종18)년 5월에 지은 것인데 충청도 홍주에서 간행하였다고 한다.

「朝鮮醫書誌」³⁴⁾를 저술한 일인학자 미키(三木榮)는 일찍이 이인영이 소장하고 있었던 「의옥집」을 직접 본 일이 있었다. 그는 이 책을 천하의 稀本이라면서

31) 「高麗史」, 文宗元年 6月 戊申(條), “制曰, 法律刑罰之斷例也. 明則刑無枉濫, 不明則罪失輕重, 今所行律令, 或多訛舛, 良用軫懷. 其令侍中崔冲, 集諸律官, 重加詳校, 務從允當.”

32) 「高麗史」, 文宗13年 2月 甲戌(條).

33) 李仁榮, 「淸芬室書目」(서울: 寶蓮閣, 1968), 167-169.

34) 三木榮, 「朝鮮醫書誌」(大阪: 三木榮, 1956).

자신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적어 두었다.³⁵⁾

발문에서 명확한 것은 태종 12(1412)년에 「무원록」이 간행되었고, 이어 「의욕집」은 태종 18(1418)년에 홍주에서 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고려 문종 13(1059)년 2월에 이선정 등이 「의욕집」 11판을 새롭게 새겨 바치기에 秘閣에 두었다는 기사가 「고려사」에 있다. 이 오래된 「의욕집」은 이미 망실되었기 때문에 이 책이 원본에 가까운 현존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력 13년에 간행된 「고사촬요」 팔도책판 중에는 영천에 「의욕집」 판본이 있다³⁶⁾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異本の 하나일 것이다(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또 「의욕집」이 11판이라는 「고려사」 문종세가의 기사는 판목이 장대하여 1판에 앞면 2장, 뒷면 2장을 포함하는 크기의 판형에 새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책이 모두 40판이므로 대략 일치한다.

전술하였듯이 버클리대학 소장본은 발문을 포함한 권미의 몇 장이 결락되어 있다. 다행히 이 판본은 이인영과 미키³⁷⁾가 기술해놓은 형태사항과 수록사안의 誤記까지 동일하다. 수록사안의 오기란 이 책의 상중하 3권의 각 卷首에 해당 권이 수록한 의욕사안의 수가 있는데 권중, 권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곧 권중 아래에는 「自第二十至五十凡疑獄事二十一件」과 같이 “제20부터 50까지 모두 의욕사 21건”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전체의 숫자는 21건이 아니라 31건이다. 31이 21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또 권하 아래에도 「自第五十一至六十四凡疑獄事二十四件」과 같이 “제51부터 64까지 모두 의욕사 24건”으로 되어 있으나 이 역시 64는 74의 잘못이다.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이인영 역시 이미 지적해 두었다. 그러므로 버클리대학 소장본은 판본의 형태사항과 수록사안의 오기사실을 볼 때 태종 18년에 홍주에서 새긴 판본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35) ‘이 책은 40판(장)이 되는데 「고려사」에는 「의욕집」이 11판(장)이라고 하므로 큰 판목1장에 앞뒤 2장씩을 새긴 것으로 보면 대략 일치한다.’는 그의 추측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1973년에 간행한 「增修版朝鮮醫書誌」(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281-2)에서는 영천에 책판이 있다는 사실만 소개하고 판의 크기에 대한 추측부분은 삭제해 버렸다.

36) 「攷事撮要」: 萬曆13(1585)年本.

정형우, 윤병대 편, 「韓國의 冊板目錄」: 上(서울: 보경문화사, 1995), 109,154.

37) 四周單邊, 無界, 11行20字, 黑口, 黑魚尾, 版心題: 獄, 全 40張(跋, 刊記包含), 字體: 歐陽體.

3.1 편성과 내용

조선전기본의 권상은 제1-29권, 권중은 제30-50권 등 모두 21권, 권하는 제51-74까지 24권 등 모두 74권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권하 제16권의 후반부터 제24권까지가 결락되어 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모두 66건이다. 이에 비해 「사고전서」에 수록된 「의옥집」은 모두 100건의 사안을 수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안들은 모두 그 제목이 있다. 「사고전서」를 편찬할 때도 「의옥집」 고본이 없자 당시 유통되던 판본 중에서 비교적 선본인 天一閣藏本을 근거로 제목을 붙였다. 또한 嶺南徐氏校刊本을 저본으로 한 「의옥집교석」과 萬曆懷慶府喬萬里刊本을 저본으로 한 「절옥귀감역주」³⁸⁾에서도 「사고전서」에 수록된 「의옥집」과 유사하게 주 인물의 성명과 각 사안을 대표하는 단어들을 합하여 제목을 삼고 있다. 조선전기본에서 확인이 가능한 66건을 대상으로 그 제목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조선전기본과 후대본들이 부여한 제목의 특성이 쉽게 나타난다. 곧 조선전기본에서는 주 인물의 성명을 제목에 올리지 않고 각 사안에 근거해서 대체로 사자성어 형식으로 제목을 삼고 있다. 그러나 후대본에서는 주 인물의 성명과 각 사안을 대표하는 단어를 합하여 사자 혹은 오자성어형식으로 만든 것이다.

한편 상권의 木枕誤殺과 중권의 詐賊販牛의 2건, 盜馬療寒 중의 후반부 1건, 誘愚積財 등 의옥사안들은 조선전기본에는 있으나 「사고전서」 수록본에는 탈락되어 있다. 또 상권의 爭絲鞭絲, 散脯獲盜와 중권의 詐賊販牛, 盜馬療寒 그리고 하권의 假銀虛盜와 같은 사안들은 한 사안에 둘 이상의 사례가 있는데 후대본들은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시켜 놓았다. 이러한 차이는 「의옥집」은 인물중심, 후대본과 「절옥귀감」은 사안중심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38) 劉俊文, 「折獄龜鑑譯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표 1> 「의옥집」 수록 의옥사안의 제목비교³⁹⁾

구분	朝鮮前期本(卷次)	主人物	四庫全書 疑獄集(卷次) ⁴⁰⁾	疑獄集校釋 ⁴¹⁾	折獄龜鑑譯注 ⁴²⁾
1	猪灰驗夫(上-1)	張舉	張舉辨燒猪(1-6)	張舉燒猪	張舉燒猪
2	爭絲鞭絲(上-2,2건)	季珪	季珪智鞭絲(1-7) 破嚙辨雞食(1-8)	季珪鞭絲 破鷄辨食	按(李惠拷皮)에 收錄 傅琰破嚙
3	斷繯追聽(上-3)	薛宣	薛宣追聽繯(1-9)	薛宣追聽	薛宣斷繯
4	木枕誤殺(上-4)	符融	없음	없음	符融占夢
5	屎燥辨枉(上-5)	孫亮	孫亮辨鼠糞(1-10)	孫亮辨密	孫亮破矢
6	散脯獲盜(上-6,3건)	高洙	王洙市鹿脯(1-11) 認皮獲賊(1-12) 書菜認賊(1-13)	高洙市脯 認皮獲盜 書菜認賊	高洙市脯(3건)
7	取兒察情(上-7)	黃霸	黃霸察姦情(1-14)	黃霸察姦	黃霸抱兒
8	擊皮知主(上-8)	李惠	惠仕拷羊皮(1-15)	惠擊羊皮	李惠拷皮
9	不哀疑殺(上-9)	莊遵	莊遵聞哭姦(1-16)	嚴遵疑哭	按(子產聞哭)에 收錄
10	枷囚疑詐(上-10)	高謙之	謙之詐獲賊(1-17)	謙之詐獲	高謙之枷囚
11	兒卒察悲(上-11)	李崇	李崇察悲嗟(1-2)	李崇還兒	按(黃霸抱兒)에 收錄
12	罵殺獲妾(上-12)	張行發	行發逼訪妾(1-18)	行發訪妾	張行發逼訪
13	向窓覺字(上-13)	張楚金	楚金辨補字(1-19)	楚金辨補	張楚金解字
14	覘語獲殺(上-14)	蔣常	蔣常覘語(1-4)	蔣恒覘語	蔣常留姬

39) 「棠陰比事」(「欽定四庫全書」: 第729冊)에서도 아래의 36건은 張舉猪灰, 傅令鞭絲, 季珪鷄頭, 薛綱互爭, 孫亮驗蜜, 莊遵疑哭, 道讓詐囚, 思就詐客, 蔣常覘姬, 裴命急吐, 李傑買棺, 孫登比彈, 御史失狀, 高柔察色, 胡質集隣, 商原詐腹, 玉素毒郭, 從事函首, 袁滋鑄金, 濟美鉤篋, 孔察代盜, 杜亞疑酒, 裴均釋夫, 元膺擒輿, 韋臯劾財, 文成括書, 張鷟搜鞍, 曹攄明婦, 崔黯搜刀, 崇龜認刀, 彥超虛盜, 張輅行穴, 宗裔卷袖, 孫寶秤鐵, 錢推求奴, 向相訪賊 등의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음.

40) 底本은 浙江省 范懋柱家 天一閣藏本.

41) 底本은 咸豐 3(1853)年 嶺南徐氏校刊本.

42) 底本은 「文淵閣四庫全書本」과 萬曆(1573-1620)懷慶府喬萬里刊本の 對校 및 其他 版本. 「절옥귀감」은 「의옥집」과 편성과 체제가 전혀 다르므로 해당되는 각각의 사안을 찾아 나열하였음.

43) 「折獄龜鑑」(「欽定四庫全書」: 第729冊, 884)에는 丙吉.

44) 「折獄龜鑑」(「欽定四庫全書」: 第729冊, 899)에는 湯仲堪, 劉俊文의 折獄龜鑑譯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187)에는 殷仲堪.

45) 「折獄龜鑑」(「欽定四庫全書」: 第729冊, 874)에는 孔循.

46) 「折獄龜鑑」(「欽定四庫全書」: 第729冊, 938), “按新唐書本傳, 作允濟, 冊府元龜, 亦作元濟, 與此本同.”

같은 책 943에는 “按允濟, 前條作元濟, 盖傳寫異文.”

47) 「欽定四庫全書」收錄 「疑獄集」(第729冊, 813)과 「折獄龜鑑」(第729冊, 943)에서는 蘇無名.

48) 「欽定四庫全書」收錄 「疑獄集」(第729冊, 815)에서는 安仲榮.

15	詐賊還牛(上-15)	裴子雲	子雲斷特牛(1-20)	子雲斷特	按(張允濟決牛)에 收錄
16	送母等語(上-16)	張松壽	松壽潛伺盜(1-21)	松壽潛伺	按(蔣常留姬)에 收錄
17	胡寡擒奸(上-17)	李傑	李傑胡婦姦(1-22)	李傑殺奸	李傑胡婦
18	比彈釋罪(上-18)	孫登	孫登比彈(1-23)	孫登比彈	孫登比丸
19	善走非盜(上-19)	符融	符融察善走(1-5)	符融察走	符融驗走
20	狀異誅誣(上-20)	御史(無名氏)	御史佯失狀(1-1)	御史奏狀	御史質狀
21	老生無影(上-21)	邴吉 ⁴³⁾	邴吉辨子影(2-1)	丙吉辨影	丙吉斷財
22	戮非還子(上-22)	黃霸	黃霸戮三男(2-2)	黃霸戮亂	黃霸戮男
23	察色首罪(上-23)	高柔	高柔察動色(2-3)	高柔察色	高柔問錢
24	學書獲謗(上-24)	國淵	國淵比書謗(2-4)	國淵比書	國淵比書
25	妻少殺夫(上-25)	胡質	胡質察色(2-5)	胡質詰奸	胡質詰吏
26	誤射從誤(上-26)	何承天	承天情斷(2-6)	承天情斷	何承天論罰
27	盜練釋疑(上-27)	司馬芝	子華不後訊(2-7)	子華成誣	司馬芝有工
28	詐喪罪妄(上-28)	商仲堪 ⁴⁴⁾	仲堪止大妄(2-8)	仲堪原律	殷仲堪原情
29	歡誘首盜(上-29)	陳表	陳表求情(2-9)	陳表求情	陳表破械
30	縛奴賺婢(中-1)	魏昶	魏昶留書(2-10)	魏昶檢書	魏昶搜宅
31	姦屍易(中-2)	從事	從事對屍(2-11)	從事對屍	府從事發瘞
32	後母藏子(中-3)	王璦	王璦案伏聽(1-3)	王璦聽密	王璦推姦
33	鎔錫明金(中-4)	袁滋	袁相探情僞(2-12)	袁相辨金	袁滋稱金
34	載屍損威(中-5)	周紆	周紆屍語(2-13)	周紆屍語	周紆語屍
35	盜銀沈水(中-6)	閻濟美	閻濟美沉銀(2-14)	濟美沉銀	閻濟美料銀
36	遺劍全子(中-7)	何武	何武斷遺劍(2-15)	何武斷劍	何武奪財
37	貧民代盜(中-8)	孔相循 ⁴⁵⁾	孔公察枉盜(2-16)	孔公察枉	孔循慮囚
38	密隨得奸(中-9)	陸雲	陸雲密隨姦(2-17)	陸雲密隨	陸雲錄妻
39	不哀有奸(中-10)	鄭子產	子產聞哭懼(2-18)	子產聞哭	子產聞哭
40	詐賊販牛(中-11,2 권)	張元(允)濟 ⁴⁶⁾	없음	없음	張允濟決牛 張允濟聽惡
41	同謀訕母(中-12)	杜亞	杜亞察誣毒(2-19)	杜亞劾誣	杜亞詰鴆
42	盜犬爲奸(中-13)	裴均	裴均察盜犬(2-20)	裴均處奸	裴均釋夫
43	喪輩擒盜(中-14)	呂元膺	元膺知喪詐(2-21)	元膺知詐	呂元膺搜輩
44	旅死欺財(中-15)	韋臯	韋臯劾司店(2-22)	臯劾司店	韋臯驗簿
45	倉欠分倍(中-16)	韋丹	韋丹察威權(2-23)	丹察權索	韋丹限納
46	換靴告賊(中-17 권)	高潛	王潛召認靴(2-24)	潛召認靴	高潛留靴
47	能察盜驢(中-18)	董行成	行成叱盜驢(3-3)	行成叱盜	董行成叱賊
48	括字伏詐(中-19)	張鷟	張鷟括詐書(3-4) 放驢求匿鞍(3-5)	張鷟括狀 放驢求鞍	張鷟括字 張鷟去轡
49	盜馬燎寒(中-20,2 권)	曹攄	曹攄詰行馬(3-6) 없음	曹攄行馬 없음	曹攄察理 曹攄明察
50	誘愚積財(中-21)	崔黯	없음	없음	崔黯搜孥
51	認方知賊(下-1)	劉崇龜	崇龜集屠刀(3-7)	劉集屠刀	劉崇龜換刀
52	榆實出藏(下-2)	無名氏 ⁴⁷⁾	無名識盜葬(3-8)	無名識盜	蘇無名獲盜

53	越訴諱絹(下-3)	趙和	趙和籍舍産(3-2)	趙和籍産	趙和斷錢
54	假銀虛盜(下-4,2건)	慕容彦超	慕容執假銀(3-9) 彦超立吐櫻(3-10)	慕容虚榜 彦超驗吐	慕容彦超穴庫 慕容彦超賜酒
55	隱金令模(下-5)	李德裕	德裕泥模金(3-11)	德裕模金	李德裕劾僧
56	殺夫誣叔(下-6)	莊遵	莊遵壁聽姦(3-1)	嚴遵壁聽	莊遵審姦
57	鐵佛能言(下-7)	張輅	張輅察佛語(3-12)	張察佛語	張輅入穴
58	縋車驗絲(下-8)	許宗裔	宗裔驗釭核(3-13)	宗裔驗核	許宗裔驗賊
59	訟子不孝(下-9)	安重榮 ⁴⁹⁾	仲榮射繼母(3-14)	重榮射忍	安重榮斃母
60	爭餌合秤(下-10)	孫實	孫實稱饅餅(3-15)	孫實稱餅	孫實稱饅
61	夫死不哀(下-11)	韓況	韓況聽哀懼(3-16)	韓況聽哭	按(子産聞哭)에 收錄
62	義子分財(下-12)	張希崇	希崇斷義嫡(3-17)	希崇明斷	張希崇判財
63	奏死車裂(下-13)	蘇秦	蘇秦料刺客(3-18)	裂秦知刺	蘇秦車裂
64	盜主訟牛(下-14)	顧憲之	憲之知牛主(3-19)	憲之解牛	顧憲之放牛
65	錢若水忠厚之德(下-15)	錢若水	若水疑留獄(4-1)	없음	錢若水訪奴
66	辨僧誣叔(下-16)	向敏中	敏中疑無賊(4-2)	없음	向敏中詰僧

3.2 底本

현재 중국과 일본에 전하는 「의옥집」은 「사고전서」에 수록된 것과 내용과 체재가 거의 동일한 후대의 간사본 뿐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개된 「의옥집」 중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전기본의 저본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정극이 「절옥귀감」을 편찬할 때 저본으로 사용한 「의옥집」에 기재되어 있던 출처표시와 각 사안의 배열 순서를 살펴보면 저본의 계통을 짐작할 수 있다. 곧 정극은 소흥 3(1133)년에⁴⁹⁾ 이 책을 편찬하면서 전체를 8권 20문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때 저본으로 삼은 「의옥집」에 수록된 모든 사안을 충실하게 「절옥귀감」에 옮겨 놓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기술한 “按”과 주석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므로 「절옥귀감」에 수록되어 전하는 「의옥집」의 사안만을 따로 분리하면 그 책을 편찬할 당시인 소흥 3년에 유통하던 「의옥집」의 원형을 거의 복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전기본과 「절옥귀감」에 수록된 의옥사안들을 비교하면 양자 간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49) 余嘉錫, 「四庫全書辨證」(劉俊文, 「折獄龜鑑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535-536).

첫째, 인용한 의옥사안의 출처 표시의 多少이다. 조선전기본은 출처를 밝힌 사안은 6건⁵⁰⁾에 불과하다. 그러나 「절옥귀감」에서는 출처를 읊기되 혹 출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舊不著出處와 같이 구집, 곧 저본으로 삼은 「의옥집」에서 출처를 기록하지 않은 사실까지 밝히고 있는 것이다.⁵¹⁾ 이 출처표시를 서로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정극이 저본으로 삼은 「의옥집」에는 66건의 사안 중에서 무려 30건에 출처가 표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출처표시가 조선전기본에 비해 증가한 것은 누군가가 각 사안의 출처를 찾아 수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출처표시의 다소로 본다면, 출처표시가 6건에 불과한 조선전기본의 저본이 소흥 3년에 정극이 「절옥귀감」을 편찬할 때 이용한 저본보다 古本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표 2> 「의옥집」⁵²⁾과 「절옥귀감」⁵³⁾의 출처표시

구분	의옥집	출처	절옥귀감	출처	의옥집의 출처표시 유무 ⁵⁴⁾
1	猪灰驗夫(卷上)	×	張學	舊不著出處	×
2	爭絲鞭絲	×	季珪(2건)	舊出南史本傳	○
3	斷縑追聽	出風俗通	薛宣	舊出風俗通	○
4	木枕誤殺	×	符融	舊出晉書載記本傳	○
5	屎燥辨枉	×	孫亮	舊出吳志	○
6	散脯獲盜	×	高湊(3건)	舊出北史本傳	○
7	取兒察情	×	黃霸	舊出風俗通	○

50) 卷上の 제3사안인 斷縑追聽은 「風俗通」, 卷中の 제2사안인 姊屍易은 「玉堂閑話」, 卷中の 제4사안인 鎔鑄明金은 「劇談錄」, 卷中の 제7사안인 遺劔全子是 「風俗通」, 卷中の 제10사안인 不哀有奸은 「獨異志」, 卷下の 제13사안인 秦死車裂은 「春秋後語」에서 인용하였다고 각 사안이 끝난 뒤에 밝히고 있음.

51) 劉俊文의 「折獄龜鑑譯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에서는 출처표시를 나타내는 “舊”에 대해 今釋(현대어 해석)에서 구체적으로 “疑獄集”으로 표시하고 있음.

52) 조선전기본.

53) 「折獄龜鑑」은 먼저 전체를 8卷 20門으로 나누고, 각 門아래 인물을 두고 의옥사를 수록하고 있음. 여기서는 조선전기본과 「折獄龜鑑」(「欽定四庫全書」收錄分)에 수록된 각 사안을 비교하기 위해 「折獄龜鑑」의 차례는 무시하고, 조선전기본의 차례에 맞추어 비교하였음.

54) 「절옥귀감」을 편찬하던 소흥 3(1133)년에 정극이 저본으로 사용한 「의옥집」에 있던 출처표시 구분을 말함. 여기서 “○”는 이미 출처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안, 당시 “×

조선전기 간행의 「의옥집」

8	擊皮知主	×	李惠	舊出北史本傳	○
9	不哀疑殺	×	莊遵	舊不著出處	×
10	枷囚疑詐	×	高謙之	舊出北史高恭之傳	○
11	兒卒察悲	×	李崇	出北史本傳	△
12	罵殺獲妾	×	張行發	舊不著出處	×
13	向窓覺字	×	張楚金	舊不著出處	×
14	規語獲殺	×	蔣常	舊不著出處當是唐人小說所載今亡本耳	×
15	詐賊還牛	×	裴子雲	舊不著出處	×
16	送母等語	×	張松壽	舊不著出處	×
17	規寡擒奸	×	李傑	舊出唐書本傳	○
18	比彈釋罪	×	孫登	舊出吳志本傳	○
19	善走非盜	×	符融	舊晉書記本傳	○
20	狀異誣誣	×	御史(無名氏)	舊不著出處蓋唐人小說所載也	×
21	老生無影	×	邴吉	舊不著出處	×
22	戮非還子	×	黃霸	舊不著出處	×
23	察色首罪	×	高柔	舊出魏志本傳	○
24	學書獲謗	×	國淵	舊出魏志本傳	○
25	妻少殺夫	×	胡質	舊出魏志本傳	○
26	誤射從誤	×	何承天	舊出南史本傳	○
27	盜練釋疑	×	司馬芝	舊出魏志本傳	○
28	詐喪罪妾	×	商仲堪	舊出晉書本傳	○
29	歡誘首盜	×	陳表	舊出吳志陳武傳	○
30	縛奴賺婢(卷中)	×	魏昶	舊不著出處	×
31	姊屍易	出玉堂閑話	從事	和嶠載玉堂閑話	○
32	後母藏子	×	王璵	舊不著出處	×
33	銘鐫明金	出劇談錄	袁滋	舊出康駢劇談錄	○
34	載屍損威	×	周紆	舊出漢書本傳	○
35	盜銀沈水	×	閻濟美	舊不著出處	×
36	遺劔全子	出風俗通	何武	舊出風俗通案此事亦見杜佑通典原本多誤字謹依通典改正	○ 1133年 鄭克이 補記
37	貧民代盜	×	孔相循	此蓋和嶠所聞五代時事	×
38	密隨得奸	×	陸雲	舊出晉書本傳	○
39	不哀有奸	出獨異志	鄭子產	舊出獨異志	○
40	詐賊放牛	×	張元(允)濟(2인)	舊出唐書本傳	○
41	同謀誣母	×	杜亞	舊不著出處	×
42	盜犬爲奸	×	裴均	舊不著出處	×
43	喪輿擒盜	×	呂元膺	舊不著出處	×
44	旅死欺財	×	韋臯	舊不著出處	×
45	倉欠分倍	×	韋丹	舊不著出處蓋唐人小說所載今新唐書修入丹傳	×
46	換靴告賊	×	高潛	舊出北史本傳	○
47	能察益驢	×	董行成	舊不著出處	×

48	括字伏詐	×	張鷟(2건)	舊不著出處	×
49	盜馬療寒	×	曹據(2건)	舊出晉書本傳	○
50	誘愚積財	×	崔黯	舊不著出處	×
51	認方知賊(卷下)	×	劉崇龜	舊不著出處蓋亦唐人小說所載	×
52	偷寶出藏	×	無名氏	舊不著出處	×
53	越訴諱絹	×	趙和	舊不著出處	×
54	假銀虛盜	×	慕容彥超(2건)	舊出五代史本傳 此蓋和嶠所聞之事	○
55	隱金令模	×	李德裕	舊不著出處	×
56	殺夫誣叔	×	莊遵	舊不著出處亦不著何代人	×
57	鐵佛能言	×	張輅	舊不著出處	×
58	練車驗絲	×	許宗裔	舊不著出處	×
59	訟子不孝	×	安重榮	舊不著出處案此事今載五代史 安重榮傳	×
60	爭餌合秤	×	孫寶	舊不著出處	×
61	夫死不哀	×	韓滉	舊不著出處	×
62	義子分財	×	張希崇	舊不著出處	×
63	秦死車裂	出春秋後語	蘇秦	舊出春秋後語	○
64	盜主訟牛	×	顧憲之	舊出南史顧凱之傳	○
65	錢若水忠厚之德	×	錢若水	見涑水紀聞	× 1133年 鄭克이 記入
66	辨僧誣叔	×	向敏中	見司馬光丞相涑水紀聞	× 1133年 鄭克이 記入

둘째, 각 사안의 배열순서이다. 정극의 주석에 따르면 “화옹이 지은 29조는 모두 시대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⁵⁵⁾고 하였다. 곧 해당사안인 “猪灰驗夫”에는 “(이 사안은) 오나라 사람 뒤와 진나라 사람 앞에 있다” 그리고 (이 사안의) 앞에는 “오폐제 손량이 있다”고 되어 있다. 29건의 사안을 수록한 상권 중에서 나라이름이 오나라로 된 사안은 모두 4건이고, 진나라 사안은 1건이다. 정극의 말을 참고로 하여 이들을 배열한다면 “猪灰驗夫”는 오나라 사안 중 가장 뒤에 있었을 것이고, 이어 진나라 사안인 “詐喪罪妾”이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조선전기본의 상권에는 오나라 사안 4건은 전 29건 중에서 1, 5, 18, 29번째에 있고, 진나라 사안 1건은 28번째에 있다. 더욱이 앞에 오나라 사람 사안이 있었다는 “猪灰驗夫”는 조선전기본에서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시대 순으로 배열된 「절옥귀감」 저본의 「의옥집」에 비해 조선전기본은 어떠한 배열의 원칙도 없다.

55) 「折獄龜鑑」, 卷6. 證惡. 張舉 條의 按(「欽定四庫全書」: 第729冊, 933), “按和凝所著二十九條, 皆以時代爲次.”

이러한 사실 역시 조선전기본의 저본이 정극이 이용한 저본보다 古本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의 두 사실로 보아 정극이 「절옥귀감」을 편찬하던 소흥 3(1133)년에는 조선 전기본의 저본과 동일한 「의욕집」은 이미 중국에서 湮滅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므로 이보다 거의 3세기 가량 늦은 15세기에 중국을 통해 고본 「의욕집」을 입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고려 문종 13년 2월에 개판된 「의욕집」이 유통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전기본의 저본은 고려 문종 때 개판되어 전하던 국내의 판본 외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고려 문종 때 이선정이 새겨 바친 「의욕집」의 매수는 11판이었고, 조선전기본 중에서 화옹이 편찬한 상권 역시 11장이다. 판목의 장수가 동일하다는 사실도 두 판본 사이의 상관성을 더욱 느낄 수 있게 한다.

3.3 후대 보충된 사안

양봉곤은 「의욕집」을 교석할 때 함풍 3(1853)년 嶺南徐氏校刊本을 저본으로 삼았다. 그가 이 판본을 저본으로 삼은 것은 그가 살핀 「의욕집」 판본 중에서 선본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판본 역시 「사고전서」에 수록된 판본과 마찬가지로 후대에 개찬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후대에 개찬된 부분을 제외하고자 했다. 그래서 개찬된 사안들을 찾는 방법으로 저작자인 화옹과 화몽의 생존연대와 수록된 각 사안에 등장하는 주 인물의 생몰년, 그리고 각 사안의 말미에 표시된 출처표시를 근거로 삼았다. 곧 「의욕집」의 저자인 화옹은 현덕 2(955)년에, 아들 화몽은 지도원년(995)에 각각 사망했는데 화몽 이후에 활동한 인물들이 「의욕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화몽이 이 책을 984년 전후인 옹희 초년에 완성했으니⁵⁶⁾ 이 이후에 태어나거나 주로 활동한 인물들의 의욕사안들은 모두 후대인들이 개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4권에 해당되는 사안들이 이에 해당한다하여 4권을 뺀 3권을 대상으로 삼았다.

56) 脫脫(元)等撰, 『宋史』卷439. 列傳 第198. 文苑. 和峴弟嶸附(條).

그런데 그가 제외한 의옥사안 중에서 조선전기본에서 수록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곧 錢若水(960-1003)와 向敏中(949-1020)의 의옥사례가 錢若水忠厚之德과 辨僧誣叔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양봉곤은 이 사안에 나오는 출처가 「의옥집」이 완성된 이후에 완성된 司馬光(1019-1062)의 「涑水紀聞」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았다. 그가 선별한 기준은 타당성을 가지지만 그는 거의 모든 사안에 출처가 표시된 1853년의 간본을 가지고 판단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조선전기본은 6건을 제외하고는 출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전약수와 향민중의 사안들은 사마광이 「속수기문」을 편찬하기 이전에 다른 책에서 인용한 것일 수도 있다. 이후 그 책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는 후대인들은 출처를 「속수기문」으로만 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옥집」 중에서 후대에 출처가 보충된 판본을 근거로 해당 사안이 후대에 개찬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일 수 있다.

사실 전약수는 송나라 옹희연간(984-988)에 주로 활약한 인물이다. 화몽이 「의옥집」을 왕께 올린 것은 985년경이므로 전약수의 사례를 화몽이 수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또한 왕께 책을 올린 뒤에도 아버지 화옹의 뜻에 따라 자신이 보충할 수도 있으므로 책을 왕께 올린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의 사례는 모두 후대인들의 개찬으로 단정해 버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조선전기본이 수록하고 있는 사안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살폈다. 그러나 조선전기본 역시 비록 고려 문종 때의 판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상권을 제외하고는 후대 보충된 「의옥집」이 수입되어 개판되었을 수도 있다. 더욱이 「옥해」에는 하 2권에 수록된 사안이 38건으로 되어 있는데⁵⁷⁾ 비해 조선전기본은 45건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후대에 보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의옥집」 원본이 전하지 않은 지금 가장 선본인 조선전기본이 수록하고 있는 사안을 후대에 보충한 것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하겠다. 혹 권미의 결락된 부분을 또 다른 전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로서는 후일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57) 王應麟, 「玉海」卷67 刑制 紹興折獄龜鑑(條).

4. 가치와 의의

4.1 유일하게 전하는 화옹의 서문

「사고전서」를 편찬할 당시에 이미 고본 「의옥집」이 망실되어 최초의 저작자인 화옹의 서문이 있는 수록된 간본이나 사본이 남아 있지 않았다. 그래서 「사고전서」에 수록된 「의옥집」은 물론 여타의 「의옥집」이나 유관한 저작 등 어디에도 원저자인 화옹의 서문은 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조선전기본의 권두에는 유일하게 화옹의 서문이 있어 이 책을 편찬하게 된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 서문이 원저자인 화옹의 서문인지 혹 후대인이 위작하여 보충한 것인지는 대비할 자료가 없어 단언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데 소흥 3년에 「절육귀감」을 편찬한 정극은 옥리 조의 按에 “화옹이 일찍이 말하기를, 깨끗하게 정성으로 목욕재계하고 하늘에게 보우함을 얻도록 기도하며, 예리하게 고전을 살피기를 다하며 옛 것에서 얻고자 생각 한다”⁵⁸⁾는 화옹의 서문을 인용해 놓았다. 이 글은 조선전기본에 있는 화옹의 서문의 말미에 그대로 전하고 있다. 조선전기본의 서문이 원래 화옹이 지은 것임이 확인되는 셈이다.

한편 「사고전서」에 수록된 「의옥집」에는 제요에 이어 가정 을미년에 이송상이 지은 서문과 화몽이 지은 서문 그리고 지원 16년에 두진이 지은 서문 등 3편이 있다. 이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화몽의 서문은 조선전기본에도 있으므로 서로 대비해 볼 수 있다. 「사고전서」 수록의 「의옥집」에서는 “선상국 노공께서 일찍이 옛부터 쟁송에 구명하기 어려운 것을 정밀히 살펴 정황을 얻은 것으로서 「의옥집」 2권을 저술하여”⁵⁹⁾라고 하여 처음 화옹이 2권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전기본에는 화옹이 1권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⁶⁰⁾ 또 말미에 화몽 자신이

58) 「折獄龜鑑」, 卷6. 嚴姦, 獄吏 條의 按(「欽定四庫全書」: 第729冊, 924), “和凝嘗曰, 潔誠齋戒, 祈獲祐於上, 穹銳意典墳, 思有得於邃古”.

59) 和嶠, 疑獄集序(「欽定四庫全書」: 第729冊, 797), “先相國魯公, 嘗採自古以來, 有爭訟難究, 精察得情者, 著疑獄集二卷.”

60) 和嶠, 附續疑獄集序, “先相國魯公, 嘗採自古以來, 有爭訟難究, 精察得情者, 著疑獄集

“감히 서적에 실린(의옥사)들을 찾고 검토하여(아버지가 편찬한 것에) 덧붙여 이으니 일백 조항이나 되어 역지로 4축⁶¹⁾으로 만들었다. 상2권은 선상국(아버지)이 편찬한 것이고, 하2권은 소자 몽이 덧붙여 이었다”⁶²⁾고 하였다. 이 역시 조선전기본에서는 4축은 3축, 상2권은 상1권, 하2권은 중하2권으로 되어 있다.⁶³⁾

이렇게 의옥집은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었고, 상권은 화옹이, 중하권은 그의 아들 화몽이 부속하여 완성한 사실은 옛 목록인 「직재서록해제」, 「군재독서지」, 「승문총목」, 「옥해」의 기록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사고전서」 제요에서 「의옥집」은 원래 3권인데 후인들이 4권으로 나누었다고 의심한 것이나 양봉곤이 후대인들이 권수를 4권으로 개찬하였다는 주장이 고본인 조선전기본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4.2 수록된 원문의 정확성

양봉곤은 의옥집의 전체의 내용을 誤, 非, 刪, 衍 등으로 구분하여 교석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교정의 경우를 뜻하는 “誤”에 해당하는 20건을 대상으로 살펴니 <표 3>과 같았다. <표 3>에서 보듯이 그가 저본으로 삼은 함풍 3(1853)년의 嶺南徐氏校刊本の 오류 20건 중에서 조선전기본은 판독이 불가능한 1건을 제외한 19건 중에서 16건은 정확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원문의 오류는 후대에 전사하면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一卷.”

61) 여기에서 軸은 卷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62) 和嶠, 疑獄集序(『欽定四庫全書』: 第729冊, 797), “因敢討尋載籍, 附續家編, 期滿百條, 勒成四軸, 上二卷, 先相國編纂, 下二卷, 小子嶠附續.”

63) 和嶠, 附續疑獄集序, “因敢討尋載籍, 附續家編, 期滿百條, 勒成三軸, 上一卷, 先相國編纂, 中下二卷, 小子嶠附續.”

<표 3> 「의옥집교석」의 오류교정의 사례

구분	제목	原本(嶺南徐氏校刊本)	교정한 문자	조선전기본	상호대비 ⁶⁴⁾
1	御史奏狀	反告	反狀	叛狀	○
2	惠擊羊皮	後漢	後魏	後漢	×
3	行發訪妾	同議者	同謀者	同謀者	○
4	楚金辨補	疑云	款云	款云	○
5	松壽潛伺	往	卽	[判讀不可]	△
6	李傑殺奸	不孝杰	不孝子	不孝杰	×
7	子華戒誣	甘州	甘陵	甘陵	○
8	仲堪原律	二親生在	二親生存	二親生存	○
9	魏昶檢書	破平懷	破平壤	破平壤	○
10	從事對屍	將比	將此	移此	○
11	周紆屍語	外有疑無	外有疑吾	外頗有疑吾	○
12	何武斷劄	歟女惡婿	擎女惡婿	擎女惡婿	○
13	杜亞劄誣	鵠	鵠	鵠	○
14	元膺知詐	兵刀	兵刃	兵刃	○
15	趙和籍產	東隣財拓腹田	東隣則拓腹田	東隣則拓腹田	○
16	趙和籍產	縣政甚卑	縣政甚卑	縣政甚卑	○
17	趙和籍產	爾果不親否	爾果不妄否	爾果不妄否	○
18	無名識盜	逃夫	逃矣	逃矣	○
19	重榮射忍	莫不增快	莫不稱快	莫不增快	×
20	韓滉聽哭	因爲	因問	因問	○

5. 결 언

「의옥집」은 오대시대 때 화옹이 처음 편찬하고, 그의 아들인 화몽이 續補하여 완성한 책으로 처음에는 3권 1책이었다. 그러나 이 책에 수록된 의옥사안이 적었으므로 후대인들이 계속 보충하여 권수를 늘이기도 하였고, 명나라 때 정극은 이 책에 수록된 사안들을 자신의 저서인 「절옥귀감」에 편입시켜 버렸다. 새롭고 풍부한 의옥사안을 수록하고 있는 유사한 저작들이 출현하자 「의옥집」의 이용도 이러한 저작에 비해 위축되었다. 이미 고본 「의옥집」은 망실되었고, 심지어 이 책 편찬자인 화옹의 서문마저 전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후일 「사고전서」를

64) “○”표시는 교정한 문자가 조선전기본과 일치하는 경우를 뜻하고, “×”표시는 일치 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그러므로 “○”표시가 많다는 것은 원문이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함.

편찬할 때도 권수 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후대에 개찬된 「의옥집」을 수록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의옥집」은 우리나라에 입수되어 고려 문종 13년에 처음 간행된 이후 조선 태종 18년에도 홍주에서 간행되었다. 태종 18년에 간행된 판본중의 하나는 이인영의 옛 소장으로 「청분실서목」에 소개되었다. 미국의 버클리대학에 소장된 조선전기본과 「청분실서목」에 수록된 의옥집의 형태사항 등을 대비해보니 버클리대학 소장의 조선전기본은 태종 18년 간본의 후쇄본으로 추정되었다.

조선전기본은 의옥사안이 시대에 내용에 따라 분류되거나 구분되어 있지 않아 매우 거칠다. 그렇지만 이 책이 주는 가치는 지대하다고 하겠다. 곧 원저자인 화응의 서문이 있는 유일한 전본이고, 각 의옥사안의 원래의 제목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 또한 오류가 거의 없이 정확하다. 다만 권씨의 몇 장이 결락되어 옥에 티로 남는다. 이제 현재까지 공개된 「의옥집」 중에서 최고의 선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전기본의 가치와 전존의 의의를 들어 결언으로 삼는다.

첫째, 원저자 화응의 서문이 남아 있는 유일한 판본이다. 이 서문을 통해 「의옥집」편찬의 의도와 향후 의옥사안을 계속 보충하고자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그의 아들인 화몽의 서문을 통해 「의옥집」은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상권은 화응, 중 하권은 그의 아들인 화몽이 이어 보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옛 목록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고전서」에 수록된 「의옥집」이나 후대의 간사본에서 「의옥집」은 모두 4권으로 2권은 화응, 2권은 화몽이 편찬한 것이라는 화몽의 서문은 후대에 위조된 사실이 명백해졌다.

둘째, 원래의 의옥사안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전기본을 보면, 각 사안에 근거해서 대체로 사자성어 형식으로 제목을 삼고 있다. 그러나 후대본에서는 인물의 성명과 각 사안을 대표하는 단어를 합하여 사자 혹은 오자성어형식으로 만들어 놓았다. 후대본이 만든 각 사안의 제목은 독자들이 쉽게 사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다.

셋째, 화응이 편찬한 상권 29건의 의옥사안과 후대본에서 탈락된 의옥사안 등을 알 수 있다. 「옥해」와 「절옥귀감」의 저본이 된 「의옥집」에는 화응이 편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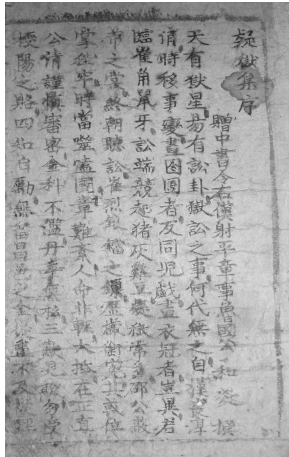
상권은 의옥사안 29건을 수록하고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미 고본 「의옥집」이 망실된 지금 어떤 사안들이 29건에 속하는지를 알 수 없었으나 조선전기본의 상권에 수록된 29건의 사안을 통해 원저자 화응이 편찬한 상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권의 木枕誤殺과 중권의 詐賊販牛, 盜馬療寒, 誘愚積財 등 4건 5사안들은 조선전기본에는 있으나 「사고전서」 수록본 등 후대본에는 탈락되었고, 상권의 爭絲鞭絲, 散脯獲盜와 중권의 詐賊販牛, 盜馬療寒 그리고 하권의 假銀虛盜와 같이 사안들은 한 건에 둘 이상의 사안이 있는데 후대본들은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넷째, 오자가 거의 없는 선본이다. 근자에 양봉곤이 후대본 「의옥집」을 교정하면서 잘못된 곳을 바로 잡아 교정한 것이 모두 20곳이었다. 그런데 조선전기본은 판독이 불가능한 1곳을 제외한 19곳 중에서 16곳이 오히려 정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원래의 「의옥집」은 대체로 정확하였는데 후대에 전사되면서 오자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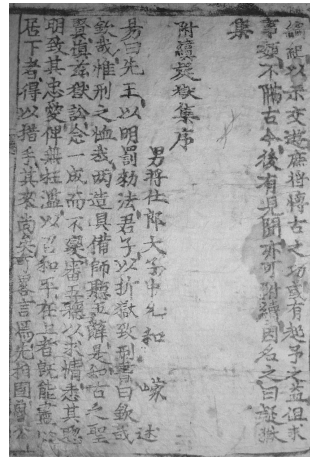
다섯째, 조선전기본의 저본으로는 고려 문종 13(1059)년 2월에 간행한 판본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소흥 3(1133)년에 정극이 편찬한 「절옥귀감」에서 알 수 있다. 곧 그는 「의옥집」의 사안들을 수록하면서 그가 저본으로 삼은 「의옥집」을 충실하게 옮겨놓았다. 이 때 그가 저본으로 삼은 「의옥집」은 66건의 사안 중에서 무려 30건에 출처가 표시되어 있었고, 각 사안들도 시대 순으로 배열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조선전기본은 출처표시가 6건에 불과하고, 각 사안들도 배열기준이 없어 매우 거칠다. 그렇다면 조선전기본의 저본은 「절옥귀감」의 저본보다 훨씬 이전의 것임이 분명해진다. 중국에서는 정극이 「절옥귀감」을 편찬하기 이전에 이미 고본 「의옥집」은 인멸되었다. 그렇다면 조선전기본의 저본은 고려 문종 때 개편되어 전하던 국내의 판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섯째, 조선전기본도 원래의 「의옥집」이 아니라 후대에 사안이 보충된 판본일 수 있다. 왜냐하면 상권에 수록된 사안의 수는 29건으로 「직재서록해제」와 「옥해」의 기록과 동일하나 중 하권에 수록된 사안은 45건으로 이들 기록보다 7건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옥집」 원본이 전하지 않은 지금 가장 선본인 조선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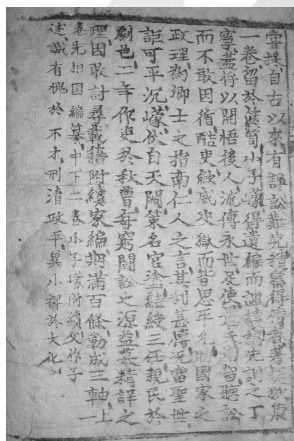
본이 수록하고 있는 사안을 후대에 보충한 것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하겠다. 혹 권미의 결락된 부분을 또 다른 전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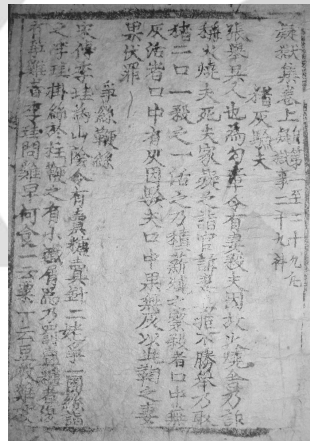
<사진 1> 화응의 서문



<사진 2> 화몽의 서문전면



<사진 3> 화몽의 서문후면



<사진 4> 권수제면

<참고문헌>

[原典類]

- 「疑獄集」. 和凝 編; 和嶠 附續.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朝鮮前期].
- 「疑獄集」. 折獄龜鑑. 棠陰比事.(欽定四庫全書: 第729冊.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
- 「折獄龜鑑」. 鄭克 撰; 錢熙祚 校(「政書集成」: 第4輯.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6).
- 「續修四庫全書」: 第916冊. 同編纂委員會 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宋史」. 臺北: 藝文印書館, [19--].
- 「玉海」. 王應麟(宋) 撰.(國立中央圖書館藏. 韓貴古10-20-나13).
- 「中華漢語工具書書庫」: 83. 同編輯委員會 編.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2.
- 「高麗史」. 文宗元年 6月 戊申(條).
- 「高麗史」. 文宗13年 2月 甲戌(條).
- 「朝鮮王朝實錄」. 成宗14年 8月 甲申(條).

[論著類]

- 馬端臨. 「新校本文獻通考經籍考」.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6.
- 楊奉琨. 「疑獄集折獄龜鑑校釋」.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88.
- 永瑤 等編. 「四庫全書簡明目錄」.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 劉俊文. 「折獄龜鑑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 島田正郎. “疑獄集・折獄龜鑑・棠陰比事”. 「中國法制史」.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3.
-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三木榮, 1956.
- 三木榮. 「朝鮮醫書誌」. 增修版.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 李仁榮. 「清芬室書目」. 서울: 寶蓮閣, 1968.
- 鄭亨愚. 尹炳泰 編. 「韓國의 冊板目錄」(上). 서울: 보경문화사, 1995.
-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 國會圖書館, 1968.
- 정극 지음; 김지수 옮김. 「절옥귀감」: 고대 중국의 명판례. 서울: 소명, 2001.

КСІ